

2017.08.17.기준

건양대학교 대학원 학칙



대 학 원

대학원 학칙(2-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건양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건양대학교 학칙 제2조에 의거하여, 건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 경영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군사경찰행정대학원, 상담대학원, 바이오비임상대학원(개정 2004.11.1)(개정 2006.11.1)(개정 2010.10.26)(개정 2011.5.31)(개정 2012.6.4.)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 <별표2>와 같다.(개정 2004.11.1)(개정 2005.11.1)(개정 2006.11.1)(개정 2006.11.15)(개정 2007.10.17)(개정 2008.8.12)(개정 2010.2.10)(개정 2010.6.2)(개정 2010.10.26)(개정 2011.5.31)(개정 2012.6.4)(개정 2012.8.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대학원에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8.8.12)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삭 제 2004.11.1)

③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대학원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계열별 또는 학과별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장 신입학 · 편입학 · 재입학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입학 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실시한다.(개정 2004.11.1)

제6조(입학자격) ①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며, 교사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표시과목이 없는) 전공은 일반인도 모집할 수 있다.

(개정2005.10.24)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삭제 2010.10.26.)

제7조(입학지원 절차) ①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원서 및 전형관련 서류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형관련 서류의 종류 및 전형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1)

제8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하며,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전형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1.1)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전공분야) 박사 및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조(재입학)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11.1)

②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회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다. 단,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개정 2016.2.5)

③ (삭제 2016.2.5.)

④ 재입학자는 제적 전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재입학자에 대한 장학금은 당해연도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6.10.10.)

제12조(편입학)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11.1)

② 편입학의 지원 자격은 동일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자에 한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다. 단, 본교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4.11.1)

③ 석사학위 과정은 2학기 이내에 박사학위 과정은 3학기 이내에 편입학 할 수 있고, 타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해당전공에서 대체과목을 선정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04.11.1)

제3장 등록 · 수업 · 휴학 · 복학 · 제적 · 퇴학 · 부전공

제13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학기의 횟수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6학기

2.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설립목적에 따라 5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2.13)(개정 2006.11.1)(개정 2010.10.26)(개정 2011.5.31)(개정 2012.6.4)(개정 2014.3.11.)

3. (삭제 2011.5.31.)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내에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을 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각 호의 학점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단 대학원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대상기준은 유지된다(신설 2004.11.1)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당해학기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3.8.22.)

⑥ 제5항에 의한 분할납부 대상자는 정해진 분납기간에 일정금액 이상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3.8.22.)

제14조(수업) 대학원의 수업은 학과 및 전공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 특성상 통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수업일수 및 휴업은 본교 학칙 제3장(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준한다.

제16조(휴학)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 수업일수의 3분의1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개정 2004.11.1.)(개정 2008.8.12.)(개정 2013.6.19.)

②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 3개 학기(개정 2011.5.31)(개정 2013.6.19.)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전문간호사과정 : 4개 학기(개정 2011.5.31.)(개정 2013.6.19.)

3. 위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의견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6.19.)

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과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기간은 2항의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 육아(24개월 미만)를 위한 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2.12.)(개정 2016.10.10.)

제17조(복학) ① 휴학 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그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1.1)

②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복학을 허락한다.

③ 미등록 휴학한자가 제1항에 의거 복학 할 시에는 복학하는 당해 학기의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신설 2004.11.1)

제18조(제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19조(퇴학) 자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각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전공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1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하여, 재학기간 중 1회만 허락한다.

(개정 2016.10.10.)

②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기 이수학점 및 성적표

3. 소속학과 및 변경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서

제21조(부전공) 각 대학원의 학생은 주전공 과목이외에도 부전공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

제4장 수업연한 · 교육과정 · 학점 · 성적 및 수료

제22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6학기,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설립목적에 따라 5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2.13)(개정 2007.8.13.)(개정 2010.10.26.)(개정 2011.5.31.)(개정 2012.6.4.)(개정 2014.3.11.)

② 각 대학원의 연구과정은 2학기로 한다.

③ 본교와 협정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소정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다.(신설 2017.8.17)

제23조(재학년한) ① 각 대학원의 재학년한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10학기이내(개정 2006.2.13)(개정 2007.8.13)(개정 2014.3.11.)

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6학기이내, 단 간호학과 전문간호학과정은 10학기 이내(개정 2014.3.11.)

3. 특수대학원 : 10학기이내(개정 2005.11.1.)(개정 2010.10.26.)(개정 2011.5.31)(개정 2012.6.4.)(개정 2014.3.11.)

②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③ 재학년한의 산출시 휴학기간,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11.1)

④ 석사학위 논문은 과정수료 후 5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은 과정수료 후 10년 이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11.1.)(개정 2013.6.19.)

제2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간에 공동교과목을 개설하고자하는 학과 또는 전공은 해당 전공주임교수가 교과목을 편성하여 해당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5조(수업) ① 각 대학원의 수업은 각 전공별 특성에 맞게 자율운영이 가능하다.(개정 2007.8.13.)(개정 2010.10.26.)(개정 2011.5.31)(개정 2012.6.4.)(개정 2014.3.11.)(개정 2017.8.17.)

② 세부지침은 대학원 수업운영 내규를 따른다.(개정 2006.2.13)(개정 2017.8.17)

③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보건, 학·군제휴 등 상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학 내의 별도의 장소에서 강의를 개설 할 수 있다.

제26조(학위과정의 수료)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년간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 및 전 과목 평점평균이 B0(3.0) 이상인 학생에 대해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3.2.12.)

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으로 한다. 단,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간호학과 전문간호학전공은 33학점(전공실습 10학점 포함)으로 한다.(개정 2006.2.13)(개정 2007.8.13)

③ 각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일로 하며,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04.11.1)

제27조(학기당 수강신청학점) ①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은 9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단, 대·내외 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은 수강신청학점 제한에 적용 받지 않는다.(개정 2007.8.13.)(개정 2010.2.10.)(개정 2010.10.26.)(개정 2011.5.31)(개정 2012.6.4.)(개정 2012.8.20.)(개정 2013.11.04.)(개정 2014.3.11.)

②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교외 전임직에 재직하는 학생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단, 이를 초과해서 수강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11.04.)

③ 선수과목 수강신청은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신설 2014.3.11.)

제28조(선수과목 이수) ① 각 대학원장은 비 동일계열 입학생에 대하여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 이수는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나 대학원 졸업학점으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 교육대학원은 졸업학점으로 포함한다.(개정 2011.5.31.)

③ 각 대학원의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1)

제29조(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①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을 희망하는 학부학생은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 학과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과목 수강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2과목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04.11.1)

제30조(교내·외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① 각 대학원 재학 중 국내·외 정규 대학원(본교 포함)에서 본인의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

업년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1)(개정 2007.10.17)

② 각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타 대학 대학원 또는 본교에 설치된 타 대학원(공개강좌 포함)과 협의하여 강의를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교내외 대학, 대학원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1)(개정 2006.11.1)

제31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연구과제, 출결사항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실 점	등 급	평 점
95~100	A+	4.01~4.5
90~94	A0	3.51~4.0
85~89	B+	3.01~3.5
80~84	B0	2.51~3.0
75~79	C+	2.01~2.5
70~74	C0	1.51~2.0
0~69	F	1.5이하
합격	P	
불합격	NP	

제32조(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의 3/4이상, 성적등급은 C0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 평균성적은 B0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P등급의 학점은 평점평균 계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33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1>,<별표2>의 학위종별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4.11.1)(개정 2005.11.1)(개정 2006.11.1)(개정 2006.11.15)(개정 2007.10.17)(개정 2008.8.12)(개정 2010.2.10.)(개정 2010.6.2)(개정 2010.10.26)(개정 2011.5.31.)(개정 2012.6.4.)(개정 2012.8.20.)

② 특수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에 한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료에 필요한 24학점 이외에 학위청구 논문을 대신하여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면 석사학위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4.11.1)(개정 2006.11.1)(개정 2014.8.6.)

③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④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

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3.6.19.)

제33조의 2(수료자 등록) 총장의 승인을 받은 특수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수료자 중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수료자 등록을 한 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8.6.)

제34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석·박사학위 과정 학생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과목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삭제 (삭제 2004.11.1)

② 삭제 (삭제 2004.11.1)

제35조(명예박사학위) ①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2/3이상의 찬성을 거쳐 총장이 수여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 할 수 있다.

제36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 또는 당해학기에 취득예정인 자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기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

제37조(논문심사)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1.1)

제38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지도 · 활동 및 장학금

제39조(학생의 의무) 각 대학원의 학생은 본 대학원학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학과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학생회)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 및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징계)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42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공개강좌 · 연구생 · 위탁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43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직무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기간·수강정원·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1.1)

③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 또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연구생) ① 각 대학원의 석·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04.11.1)

②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신설 2004.11.1)

④ 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신설 2004.11.1)

⑤ 연구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신설 2004.11.1)

제45조(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민·관·군 등 외부 관련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1)

제46조(외국인 학생) 외국인으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전형으로 정원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11.1)

제8장 교외지역에서의 강좌 개설

제47조(교외지역 강좌개설) 각 대학원은 동일 과정에 등록된 다수의 학생이 지리적 여건상 본교 캠퍼스에서 수업하기 어려운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장에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4.11.1)

제9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

제48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 교원 중에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4.11.1)

② 대학원위원회의 구성은 각 대학원장, 처장 및 직전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학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개정 2004.11.1)(개정 2007.2.15)(개정 2008.8.12.)(개정 2010.6.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11.1)

제49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각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본 학칙 및 대학원 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49조의1(대학원위원회의소집 및 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04.11.1)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11.1)

제50조(주임교수) 각 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마다 전공주임교수를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04.11.1)

제51조(전공주임교수회) 각 대학원에 전공주임교수회를 두며 입학, 수료, 학위수여, 교육과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 후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0장 학군제휴

제52조(학군제휴 입학) 학군 위탁교육에 관한 학군제휴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의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군 위탁생은 정원 내 에서 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군 위탁생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로 교육부 통보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직접 추천한 군 위탁생만 별도 정원으로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05.11.1)
2. 입학자격은 이 학칙 제6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3. 등록금은 반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학칙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학점의 인정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군내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및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5.11.1)
 - 나. 군 위탁생이 근무지 변경시 소속대학원의 승인 하에 협약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6내지 12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다. 학위수여를 위한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각 대학원의 학위수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는 각 대학원의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단, 제 52조 ①항에 의한 군위탁생은 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소속학과의 전공과 관련하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주제를 선정하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
 - 마. 각 대학원은 필요시 군내 전문가를 논문 지도교수로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하게 할 수 있다.
5.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칙과 협약서에 의한다.

제53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양대학교 학칙을 따른다.

제54조(시행세칙의 제정)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본 대학원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건양대학교 대학원학칙, 경영행정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 보건대학원학칙, 정보통신대학원학칙은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원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② 본 대학원 학칙 시행 전 각 대학원별 입학자가 본 대학원 학칙 적용을 희망 할 경우 이를 적용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학칙개정) 본 대학원 학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칙 개정일 이전 실버서비스산업학과 치유선교학전공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신설된 치유선교학과 소속으로 변경 한다.

② 정보통신대학원은 학칙 개정일로부터 폐원하고, 그 입학정원5명은 2005학년도 신입생모집부터 경영행정대학원 입학정원 에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0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의 변경된 학위종별(행정학석사→사회복지학석사)은 200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0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개정일 이전 경영행정대학원 군사학과 재적생은 2007학년도 신설된 국방관리대학원 군사학과로 소속변경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대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위치변경 인가에 따라 2006년 3월 1일부터 대전캠퍼스에서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개정일 이전 경영행정대학원과 국방관리대학원은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시기부터 경영사회복지대학원과 군사경찰행정대학원으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대학원 병원관리학과의 변경된 학위종별(병원경영학석사→보건학석사)은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경영사회복지대학원 의료관광학과는 2014학년도부터 의료관광마케팅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학원 학칙 제27조(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2014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3조의 2는 본 학칙 개정 이전 수료생에 대해 소급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병원경영학과, 의과학과(시과학전공)의 변경된 학위종별은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는 2016학년도 1학기 재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대학원 학칙은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학원 학칙 제22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및 개설학과(전공), 학위종별(개정 2005.11.1)(개정 2006.11.1)(개정 2006.11.15)(개정 2007.10.17)(개정 2008.8.12.)
 (개정 2010.02.10.)(개정 2010.10.26)(개정 2011.05.31.)(개정 2012.06.04.)(개정 2012.08.20.)(개정 2013.06.19.)(개정 2014.08.06.)(개정 2014.10.02.)(개정 2015.08.28.)
 (개정 2015.10.06.)(개정 2016.10.10.)<별표3>,<별표4>,<별표5>(2004.11.1.폐지)(개정 2017.08.17.)

1. 석사학위과정

계열	학과	연도별 개설학과																				학위종별	수업 장소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인문 · 사회	국어국문학과	○	○	○	○	○	○	○	○	○	○	○	○	○	○	○	○	○	○	○	○	○	○	○	○	문학석사	대전 캠퍼스
	영어영문학과	○	○	○	○	○	○	○	○	○	○	○	○	○	○	○	○	○	○	○	○	○	○	○	○	문학석사	
	상담심리학과									○	○	○	○	○	○	○	○	○	○	○	○	○	○	○	○	문학석사	
	경영학과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학석사	
	미용학과												○	○	○	○	○	○	○	○	○	○	○	○	○	미용학석사	
	교육학과													○	○	○	○	○	○	○	○	○	○	○	○	교육학석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	○	○	○	○	○	○	○	○	○	○	문학석사	
세무학과														○	○	○	○	○	○	○	○	○	○	○	세무학석사		
자연 · 과학	화학과			○	○	○	○	○	○	○	○	○	○	○	○	○	○	○	○	○	○	○	○	○	○	이학석사	
	간호학과								○	○	○	○	○	○	○	○	○	○	○	○	○	○	○	○	간호학석사		
	방사선학과																		○	○	○	○	○	○	방사선학석사		
	임상병리학과																				○	○	○	○	이학석사		
	의료뷰티학과														○	○	○	○	○	○	○	○	○	○	의료뷰티학석사		
의과학과																					○	○	○	○	물리치료학석사 방사선과학석사 응급구조학석사 이학석사 작업치료학석사 치위생학석사		
공학	전산공학과	○	○	○	○	○	○	○	○	○	○	○	○	○	○	○	○	○	○	○	○	○	○	○	○	공학석사	
	정보전자공학과						○	○	○	○	○	○	○	○	○	○	○	○	○	○	○	○	○	○	○	공학석사	
	기계공학과						○	○	○	○	○	○	○	○	○	○	○	○	○	○	○	○	○	○	○	공학석사	
	건축공학과						○	○	○	○	○	○	○	○	○	○	○	○	○	○	○	○	○	○	○	공학석사	
	생명환경공학과						○	○	○	○	○	○	○	○	○	○	○	○	○	○	○	○	○	○	○	공학석사	
	환경화학공학과							○	○	○	○	○	○	○	○	○	○	○	○	○	○	○	○	○	○	공학석사	
	화학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식품공학과							○	○	○	○	○	○	○	○	○	○	○	○	○	○	○	○	○	○	공학석사	
	건설환경공학과										○	○	○	○	○	○	○	○	○	○	○	○	○	○	○	공학석사	
	제약공학과													○	○	○	○	○	○	○	○	○	○	○	○	공학석사	
	의공학과															○	○	○	○	○	○	○	○	○	○	공학석사	
의료공학과																					○	○	○	○	공학석사 의공학석사		

계 열	학 과	연도별 개설학과																				학위종별	수업 장소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예능	조형예술학과						○	○	○	○	○	○	○	○	○	○	○	○	○	○	○	○	○	○	○	미술학석사	
의학	의학과						○	○	○	○	○	○	○	○	○	○	○	○	○	○	○	○	○	○	의학석사		
입학정원		40	40	20	20	20	50	50	50	50	50	50	70	76	88	88	85	77	71	68	91	83	93	93			

- ※ 2012.8.20.부로 건설시스템공학과→건설환경공학과로 학과명 변경
- ※ 의료뷰티학과 계열을 인문사회계열→자연과학계열로 변경(2015학년도부터 적용)
- ※ 특수교육학과→교육학과로 학과명 변경(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 의료뷰티학과는 일반대학원→보건복지대학원으로 소속변경(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 의과학과는 전공에 따라 학위종별이 상이함
물리치료학전공(물리치료학석사), 방사선과학전공(방사선과학석사), 시과학전공(이학석사), 응급구조학전공(응급구조학석사), 임상병리학전공(이학석사),
작업치료학전공(작업치료학석사), 치위생학전공(치위생학석사)
- ※ 의료공학과는 전공에 따라 학위종별이 상이함
의료IT공학전공/의료공간디자인학전공/의료신소재학전공(공학석사), 의공학전공(의공학석사)
- ※ 의과학과 시과학전공 수여학위명을 시과학석사 → 이학석사로 변경(2015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2. 박사학위과정

계 열	학 과	연도별 개설학과																		학위종별	강의 장소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인문·사회	경영학과	○	○	○	○	○	○	○	○	○	○	○	○	○	○	○	○	○	○	○	경영학박사	대전 캠퍼스
	행정학과	○	○	○	○	○	○	○	○	○	○	○	○	○	○	○	○	○	○	○	행정학박사	
	병원경영학과											○	○	○	○	○	○	○	○	○	보건학박사	
	상담심리학과												○	○	○	○	○	○	○	○	문학박사	
	교육학과													○	○	○	○	○	○	○	교육학박사	
	군사학과																○	○	○	○	군사학박사	
자연·과학	화학과	○	○	○	○	○	○	○	○	○	○	○	○	○	○	/	/	/	/	/	이학박사	
	보건학과						○	○	○	○	○	○	○	○	○	○	○	○	○	○	보건학박사 의료뷰티학박사	
	치유선교학과							○	○	○	○	○	○	○	○	○	○	○	○	○	치유선교학박사	
	간호학과														○	○	○	○	○	○	간호학박사	
	의과학과															○	○	○	○	○	이학박사	
공 학	제약공학과											○	○	○	○	/	/	/	/	/	제약공학박사	
	의료공학과															/	/	○	○	○	공학박사	
의 학	의학과	○	○	○	○	○	○	○	○	○	○	○	○	○	○	○	○	○	○	○	의학박사	
입학정원		12	12	12	12	12	12	20	20	20	20	27	32	36	36	36	36	36	36	36		

- ※ 병원행정관리학과→병원경영학과로 학과명 변경(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 병원행정관리학과 수여학위명을 병원행정관리학박사 → 병원경영학박사로 변경(2014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 ※ 상담심리학과 수여학위명을 철학박사 → 문학박사로 변경(2014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 ※ 특수교육학과→교육학과로 학과명 변경(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 보건학과는 전공에 따라 학위종별이 상이함
보건학전공/안경광학전공/임상병리학전공/작업치료학전공(보건학박사), 의료뷰티학전공(의료뷰티학박사)
- ※ 병원경영학과 수여학위명을 병원경영학박사 → 보건학박사로 변경(2015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별표2>특수대학원(경영사회복지, 보건복지, 군사경찰행정, 상담, 바이오비임상) 입학정원 및 개설학과(전공) 학위종별(개정 2005.7.11)(개정 2006.2.13)(개정 2006.11.1)(개정 2006.11.15)(개정 2007.10.17)(개정 2008.8.12)(개정 2010.6.2)(개정 2011.5.31)(개정 2012.6.4)(개정 2012.8.20)(개정 2013.6.19)(개정 2013.8.22)(개정 2013.11.04)(개정 2014.08.06)(개정 2014.10.02)(개정 2015.02.13)(개정 2015.10.06)(개정 2016.10.10)(개정 2017.08.17.)

대학원 (개설과정)	계 열	학 과	연도별 개설학과																			학위종별	강의 장소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경영사회복지 대학원 (석사)	인문 사회	경영학과	○	○	○	○	○	○	○	○	○	○	○	○	○	○	○	○	○	○	○	○	○	○	경영학석사	대전 캠퍼스	
		행정학과	○	○	○	○	○	○	/	/	/	/	/	/	/	/	/	/	/	/	/	/	/	/	행정학석사		
		행정상담학과					○	○	/	/	/	/	/	/	/	/	/	/	/	/	/	/	/	/	행정학석사		
		사회복지행정학 과							○	○	○	○	/	/	/	/	/	/	/	/	/	/	/	/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과											○	○	○	○	○	○	○	○	○	○	○	○	사회복지학석사		
		병원경영학과			○	○	○	○	○	/	/	/	/	/	/	/	/	/	/	/	/	/	/	/	/		경영학석사
		정보산업학과					○	○	○	/	/	/	/	/	/	/	/	/	/	/	/	/	/	/	/		경영학석사
		전자상거래학과							○	○	○	○	○	/	/	/	/	/	/	/	/	/	/	/	/		경영학석사
		군사학과										○	○	/	/	/	/	/	/	/	/	/	/	/	/		군사학석사
		경찰행정학과												○	○	○	○	/	/	/	/	/	/	/	/		경찰행정학석사
		호텔관광학과																		○	○	○	○	○	○		호텔관광학석사
		세무학과																					○	/	/		경영학석사
입학정원			40	16	31	31	51	51	51	51	36	41	41	36	36	36	36	34	25	25	25	20	23	18	18		

- ※ 2012.3.1.부로 경영행정대학원 → 경영사회복지대학원 명칭 변경
- ※ 의료관광학과 → 의료관광마케팅학과 명칭 변경(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 의료관광마케팅학과 → 호텔관광학과 명칭 변경(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의료관광마케팅학과 수여학위명은 의료관광학석사 유지

대학원 (개설과정)	계 열	학 과	연도별 개설학과																				학위종별	강의 장소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보건복지 대학원 (석사)	자연· 과학	보건학과								○	○	○	○	○	○	○	○	○	○	○	○	○	○	○	보건학석사	대전 캠퍼스
	인문· 사회	병원경영학과									○	○	○	○	○	○	○	○	○	○	○	○	○	보건학석사		
	자연· 과학	운동처방학과									○	○	○	○	○	○	○	○	○	○	○	○	○	○	운동처방학석사	
		실버서비스산업학 과									○	/	/	/	/	/	/	/	/	/	/	/	/	/	보건학석사	
		치유선교학과										○	○	○	○	○	○	○	○	○	○	○	○	○	치유선교학석사	
		안경광학과													○	○	○	○	○	○	○	○	○	○	안경광학석사	
		작업치료학과														○	○	○	○	○	○	/	/	/	보건학석사	
		임상병리학과															○	○	○	○	/	/	/	/	보건학석사	
		물리치료학과																	○	○	○	○	○	○	물리치료학석사	
		유전상담학과																			○	○	○	○	유전상담학석사	
		의료뷰티학과																				○	○	○	의료뷰티학석사	
입 학 정 원										20	50	50	50	40	44	57	57	57	65	65	68	70	70	70	67	

- ※ 2012.8.20.부로 병원관리학과 수여학위명은 병원경영학석사 → 보건학석사로 변경
- ※ 병원관리학과 → 병원경영학과로 명칭 변경(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 의료뷰티학과는 일반대학원→보건복지대학원으로 소속변경(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대학원 (개설과정)	계 열	학 과	연도별 개설학과																		학위종별	강의 장소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군사경찰행정 대학원 (석사)	인문· 사회	군사학과											○	○	/	/	/	○	○	○	○	○	○	○	군사학석사	대전 캠퍼스											
		국방공무원정책학과													○	○	○	/	/	/	/	/	/	/	행정학석사												
		군상담심리학과												○	○	○	○	○	/	/	/	/	/	/	군심리학석사												
		예비전력학과												○	○	○	○	/	/	/	/	/	/	/	예비전력학석사												
		군.경상담심리학과																○	○	○	○	○	/	/	군.경심리학석사												
		경찰행정학과																○	○	○	○	○	○	○	행정학석사												
		예비전력지휘학과																		○	○	○	○	○	예비전력학석사												
		통일전략학과																					○	○	정치학석사												
	재난안전소방학과																						○	공학석사													
입 학 정 원																								25	30	30	30	15	15	15	15	15	15	15	15	18	

※ 2012.3.1.부로 국방관리대학원 → 군사경찰행정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 국방예비전력학과 → 예비전력지휘학과로 명칭 변경(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대학원 (개설과정)	계 열	학 과	연도별 개설학과																		학위종별	강의 장소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상담대학원 (석사)	인문· 사회	상담심리학과																							○	○	○	○	○	○	○	○	상담심리학석사	대전 캠퍼스						
	입 학 정 원																																14	20	25	25	25	30	25	25

대학원 (개설과정)	계 열	학 과	연도별 개설학과																		학위종별	강의 장소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바이오비임상 대학원 (석사)	자연 · 과학	독성평가학과																		○	○	○	○	○	○	이학석사	대전 캠퍼스
		입 학 정 원																		15	15	15	15	15	15		

※ 독성평가학과 수여학위명을 독성학석사 → 이학석사로 변경(201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대학원 (개설과정)	계 열	학 과	연도별 개설학과																		학위종별	강의 장소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교 육 대 학 원 (석사)	인문 · 사회	국어교육전공					○	○	○	○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폐원
		외국어교육(영어, 일어)전공					○	○	/	/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영어교육전공							○	○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조기영어교육전공								○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일어교육전공								○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상담교육전공								○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유아교육전공								○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지역문화교육전공					○	○	○	○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교육행정전공								○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중국어교육전공											○	○	/	/	/	/	/	/	/	/	/	/	교육학석사	
		미디어교육전공											○	○	○	○	○	○	○	○	○	○	○	○	교육학석사	
	자연 · 과학	과학(화학)교육전공					○	○	○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수학교육전공					○	○	○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체육교육전공					○	○	○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보건교육전공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전자계산교육전공					○	○	○	○	○	○	○	○	○	/	/	/	/	/	/	/	/	교육학석사		
		입학정원					80	80	100	130	130	130	130	90	75	50	50	45	40	20	20					
정보통신 대 학 원 (석사)	공학	컴퓨터공학과								○	/	/	/	/	/	/	/	/	/	/	/	/	/	공학석사	폐원	
		정보통신공학과								○	/	/	/	/	/	/	/	/	/	/	/	/	/	공학석사		
		바이오컴퓨터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입 학 정 원									20	5	/	/	/	/	/	/	/	/	/	/	/				

※ 유아교육전공 계열을 자연과학계열→인문사회계열로 변경(2014.8.6.부로 변경)